

순천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규정

제정 1982. 8. 01. 개정 1992. 7. 28.
개정 2010. 9. 01. 전부개정 2011.5. 30.
개정 2013. 5. 07. 개정 2014. 4. 07.
개정 2015. 3. 03. 개정 2018. 4. 16.
개정 2018. 10. 29. 개정 2019. 2. 13.
개정 2019. 9. 10.

제1조(목적) 순천대학교의 신입생 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입학전형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7., 2015. 3. 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입학 정책 및 제도의 개발
2.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주요사항
3. 대학입학 전형관리업무의 주요사항
4. 그 밖에 대학입학 전형 및 부정입학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2. 1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9. 10.>

② 위원장은 입학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부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명 이상의 외부인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 5. 7., 2018. 4. 16., 2018.10.29., 2019. 9. 10.>

1. 정보전산원장, 입학지원실장
2.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외부인사(변호사, 교사, 장학사 등) 중에서 총장이 임명·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학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수당)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지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982. 8. 1.>

이 규정은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90호 학칙 2015. 3. 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순천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 제명을 순천대학교 입학전형위원회로 하고 규정 중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입학전형위원회로 한다.

부 칙 <2018.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